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17 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윤재옥ㆍ이인선ㆍ정희용

김기웅 • 최수진 • 김소희

이주영 · 김은혜 · 박성민

김상훈 · 이달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25 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 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라 가계지출의 약 15%를 차지하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6조(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	제96조(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		
대한 세액감면) ① 대통령령으	대한 세액감면) ①		
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			
으로 정하는 임대주택(이하 이			
조에서 "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			
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			
<u>025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끝나	<u>2028년 12월 31일</u>		
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			
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			
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			
감면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